



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, 동원빌딩 3층	대표 02-755-5025	Fax 02-755-5026
담당자 : 최백규 대리	직통 02-2088-3483	E-MAIL cbk@iaa.or.kr

문서번호 : 대협 21-149호

2021년 09월 15일

수 신 : 전 법인보험대리점

제 목 : 보험대리점 「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」 및 「금융소비자보호기준」 제정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) 제2항에 및 동법 제32조(금융상품 비교공시 등)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☐ 목적 : 보험대리점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

☐ 제정근거

【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)】

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.

【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(금융상품 비교공시)】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

□ 제정대상 : 직전 분기의 일평균 기준 소속설계사 5인 이상 보험대리점

【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(내부통제기준)】

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.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

【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9조(내부통제기준)】

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

나.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)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5명 미만

(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(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)

□ 제정·개정시 공지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【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9조(내부통제기준)】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다)을 제정·개정한 경우에 제정·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□ 시행일자 : 2021.09.25일부터 시행

- ※ 붙임 : 1.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1부.
2.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부.
3.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요약 1부.
4.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관련 FAQ 1부.
5. 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이슈 1부.
6. 금융권 소비자보호책임자 겸직 이슈 관련 검토 결과 1부.
- (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GA 해당)
7. 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1부.
8. 금융소비자보호 핸드북 1부. 끝.



사단법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

회 장 조 경

